

뉴욕주의 민간경비제도와 시사점

안황권*

요 약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시큐리티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첫째, 전문 법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둘째, 밀접한 민·관 협력 연계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Private Security of New York State and the Current Insight

Ahn, Hwang Kwon*

ABSTRACT

The U.S. security regulation is under the influence of each state's law; however, they are mostly similar. Among many states which has the longest history of security regulation in the U.S., state of New York has been shown security regulation for a long time. The state of New York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ecurity significantly because it is economically, culturally, and internationally important place at the same time. New York's state law of security business includes: 1. private investigators and bail enforcement agents and watch, guard or patrol agencies license law. 2. Security guard act of 1992~, 3. Title 19 New York State's code of rules and regulation (NYCRR). The law of New York City's private security could inspire Korean private security law in many ways. First, administration of professional law and variety of licensure could be an inspiration to the Korean security services. Second, there are intimate partnership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n the U.S. New York police's private security partnership has been started since 1986 by Area Police/Private Security Liaison (APPL program) and there are about 1,300 of security companies participating. This program provides not only the simple partnership but also giving essential information for promoting public safety.

Key words : security regulation, New York State, security business, Security guard act, private security

접수일(2017년10월1일), 게재확정일(2017년10월31일)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1. 서 론

미국 정치체계의 특징은 권력이 여러 단계의 정부에 분배되어 있는 점이다. 그중 50개 주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주마다 구역, 천연자원과 공업화, 인구, 1인당 소득 등의 제 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특히 개인적 활동은 주정부 단위에서 규제하고 있다.

경비업에 관한 규제도 각 주(州)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규제내용이 유사하다. 뉴욕 주는 가장 오래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 주 중에 하나이다.

뉴욕 주의 경비업 관련법은 ①민간탐정 및 보석금시행대리인, 감시, 경비 및 패트롤 사업면허법(이하 경비 및 패트롤사업면허법이라 함, Private Investigators, Bail Enforcement Agents and Watch, Guard or Patrol Agencies License Law), ②일반영업법의 제7장A~(Security Guard Act of 1992), ③뉴욕주법 규칙9편: 경비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Title 19 New York State's Code of Rules and Regulation(NYCR R))이 있다.

경비업의 소관 관청은 뉴욕 주 주무성(Department of State)과 범죄사법국이 있다. 주무성은 경비업자·경비원의 자격 제도를, 형사사법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은 경비원에게 의무 부여되어 있는 교육·연수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으로서 미국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을 소개하고 이어서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평가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50개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 D. C.(District of Columbia)로 구성된 연방제 공화국이다. 이 중 뉴욕주는 동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자리잡고 있다. 뉴욕은 금융, 문화, 국제기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시이며, 그로 인해 치안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부각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9·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있어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치안유지활동(policing)을 논의하는 경우에 그 주체를 기준으로 민간(Private)과 공공(Public)으로 나눌 수 있다.

치안유지활동을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목표, 자원, 법적권한, 관할, 조직의 구성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다[3].

첫째, 민간경비의 목표는 계약기간과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목표의 대부분은 고객의 결정에 따른다. 어떤 목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수되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목표들도 있다. 예를 들면 뉴욕시에 위치한 백화점 점포 내에 경비원이 근무한다고 해서 절도범죄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의 목표는 다원적이고 일시적이고 갈등관계인 경우가 있기에 완벽히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학내 성폭행과 범죄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대학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대학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렇다.

둘째, 자원은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 사회기술(Social Technologies), 인적 네트워크(Personal Networks)가 있다. 물질적 자원은 민간경비업에 있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기기를 제공한다. 민간경비산업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화기, 방어장비, 과학적·전자 기기를 제공한다.

미국의 민간경비업은 대부분 어떠한 제한도 없이 경찰과 유사한 물질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기기는 통신수신기거나 비디오카메라 같은 오감을 높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몇몇 민간경비기관은 가장 세련된 경찰이나 군사조직에 필적할 정보수집이 가능한 상태이다.

실제 민간경비업체 중에는 투시경, 적외선탐지기, 고속차량, 특별훈련된 경비견 등의 장비를 갖춘 패트롤부대를 운영하는가 하면, 사립탐정 회사의 경우 카

지도 산업에 수천 명의 이름과 사진을 수집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갬블 사기단의 화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심리학이나 범죄학의 지식을 통해 인간 행동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행동을 일으키는 수법 등을 제공하고 있거나 공직 지원자의 범죄적 경향을 지녔는지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또 퇴직 경찰관의 고용을 통하여 공공부분과 실질적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되기도 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에서 이용 가능한 법적 권한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민간경비업은 신변을 구속, 조사, 체포, 취조하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는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반시민은 면전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와 피체포자가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많은 경비원들은 고객의 법적 권한으로부터 파생하는 재산, 계약,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체포권한은 훨씬 중요하지 않은 역할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민간경비업은 또한 일반시민 보다도 큰 체포와 신변구속의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민간경비업자는 빈번히 지자체, 또는 각주의 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공무원으로써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명은 연방, 주, 또는 시정부가 특별히 지명된 개인에게 통상적으로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지역에서 경찰로서의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하는 공식적 방법이다.

일부 소수의 민간경비업에서는 상근 경찰관이 ‘야간 아르바이트(moonlight)’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번 일에 민간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점포, 영화관, 회사 등에서 경찰의 제복을 입고 통상의 순찰차를 물면서 경비에 종사하는 것이다.

넷째, 모든 법적 권한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있다. 즉 법적 권한은 특정한 관할 내에서만 타당한 것이다. 경찰에게 있어 관할은 제정법에 의해 정해진 것들이다. 민간경비에 있어서도 법적 권한을 정한 법이 해당 관할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차이점이 있다. 일반시민의 권한과 마찬가지로의 권

한에만 의존하는 민간경비업은 일부의 일반시민이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정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시민의 재산 보호 이외의 사례로서 고객의 법적 권한이 민간경비업의 권한을 정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찰서는 관할을 벗어난 곳에서 비번의 경찰관이 민간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할을 벗어난 곳에서는 권한 외의 권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이 아닌 경찰관으로서 경찰권 활용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은 민간경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경비를 하든지 또는 기존의 조직구조를 통한 자체경비를 해야한다. 많은 고객은 계약경비에 의한 민간 치안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그것은 자체경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행정관리가 편리하며 인적 자원관리가 탄력적이며 전문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1].

일부 자체경비를 선호하는 경우는 이직률이 낮고 통제가 용이하며, 충성심이 높기 때문이다.

3. 뉴욕주의 민간경비 제도

3.1 경비관련법과 자격제도

3.1.1 경비관련법

경비업에 관한 규제는 각 주의 주법(州法)에 정해져 있지만, 많은 규제 내용은 유사하다. 뉴욕주는 가장 오래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 주 중의 하나이다.

뉴욕 주의 경비업과 관련된 법은 ① 민간탐정 및 보석금 시행대리인, 감시, 경비 및 패트롤 사업면허법 (Private Investigators, Bail Enforcement Agents and Watch, Guard or Patrol Agencies License Law, 이하 경비 및 패트롤사업면허법이라 함), ② 일반영업법의 제7장A~(Security Guard Act of 1992), ③ 뉴욕주 법규제9편: 경비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Title 19 New York State’s Code of Rules and Regulation (NYCRR) 등이 있다.

경비업의 소관관청은 뉴욕 주 주무성(Department

of State)과 범죄사법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이 있다. 주무성은 자격제도를, 범죄사법국은 경비원에게 의무 부여되어 있는 교육·연수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3.1.2 경비업의 자격제도

경비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주무성(州務省)으로부터 경비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 제도에 관한 규정은 경비 및 패트롤사업 면허법과 경비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정부가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경비업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경험, 연령, 시민권, 범죄력, 신뢰할 수 있는 주민 5인 이상의 승인, 보증증권, 상해보험에 대해서 경비 및 패트롤사업면허법 제72조, 제74조와 경비원법 제89-g에 규정되어 있다[7].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필기시험은 적어도 1인의 책임자가 응시해야 한다. 연령·시민권·범죄경력·인격에 관한 조건은 사장, 사무국장, 경리담당직원, 뉴욕 주내에서 활동하는 직원, 중역의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

경비업 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소정의 수수료가 있으며 갱신 시에도 같은 금액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일반 회사가 자사의 소유물만을 위해 경비원을 사원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경비회사로 보지 않으며,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단 고용된 경비원수와 가입된 보험금액을 주무성에 보고해야 한다[8].

경비업 자격으로는 무장현금수송업, 탐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무장현금수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성으로부터 무장현금수송업(Armored Car Carriers)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5].

탐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성으로부터 탐정(Pri vate Investigator)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7].

3.2 경비원 직무 및 자격, 요건 등

경비업자는 유효한 자격을 가진 경비원만을 고용할 수 있다. 자격을 가진 경비원의 정보는 경비업자로부터 주무성에 보고되며, 데이터베이스로 일괄 관리되며, 직업력이나 범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에는 경비원(Security Guard), 특별무장경비원(Armed Security Guard)이 있다.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경비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또한 경보장치의 설치자(Alarm Installer)에게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Alarm Installer의 자격 제도는 Business of Installin g, Servicing or Maintaining Security or Fire Alarm System에 규정되어 있다[6].

경비원이 자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수, 연령, 시민권, 범죄력, 인격 및 적정조건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뉴욕 주의 경비원 자격 제도는 다른 주보다도 엄격하다. 이전에는 경비업자의 자격 제도가 없었지만, 1992년의 경비원법에 의해 경비원자격 제도나 지문등록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교육연수에 관한 규정도 행해지고 있다. 경비원의 범죄경력이나 직업경력을 일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정비되고 있다. 그를 위해 주정부, 경비업자와 함께 현재의 대처는 충분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3 경비원이 사용하는 호신용구 및 무기와 자격

3.3.1 소지하고 있는 호신용구, 무기

경비원은 특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경비원이 소지할 수 있는 무기의 범위는 일반시민과 다르지 않다.

경봉(Billy)의 소지는 일반시민, 경비원 모두 뉴욕 주 Penal Law §265.01에 의거하여 위반이 된다. 경봉(Billy) 중에서 소위 police baton이라고 부르는 길이 24-26인치의 경봉은 훈련을 받은 경관만이 소지할 수 있다 [10].

또한 최루가스(Mace)는 Penal Law §270.05로 규정된 'noxious material'에 따르며, 일반시민, 경비원도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총은 특별무장경비원만이 소지할 수 있다. 경비원에게 총을 소지시키는 것은 경비업자의 부당증가로 이어진다. 경비업자는 총관리의 책임자를 두고 매월

총의 소재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보험 부담이 크다. 그를 위해 현금수송 등을 제외한 경비원이 총을 소지한 경우는 적고, 총의 소지는 경비원 전체의 1%에도 미달된다. 그러나 경비원이 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무장경비원의 자격이 필요하며, 총을 사용할 때에는 뉴욕 주 형법(Penal Law)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3.2 경비용 기기 사용에 필요한 자격

경비원 License로 경비용 기기를 설치, 관리, 유지(Maintain)할 수는 없다. 별도의 자격(Alarm Installer)이 필요하다.

Alarm Installer 자격 요건은 Business of Installing, Servicing or Maintaining Security or Fire Alarm System에 정해져 있다. 경비원보다도 고도의 교육수준이 요구되며, 시험이 부과된다.

Alarm Installer의 자격 취득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째, 18세 이상으로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 필기시험과 소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둘째 경비용기기의 설치, 관리업무 실무경험이 2년이상(실무경험 3,500시간 이상)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나 소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셋째, Master Electrician은 Alarm Installer 라이선스 관련 취득요건이 모두 면제된다.

3.4 경비원 교육훈련

3.4.1 교육훈련체계

경비업법(Security Guard Act of 1992)에 의해 경비원은 ‘채용전 8시간의 연수’, ‘16시간의 OJT 연수’, ‘8시간의 연차연수’를 받아야 한다 [8].

채용전 8시간의 연수는 경비전반에 관한 입문적 연수이다. 연수 종료 후에 실시되는 시험에서 70%이상 일 경우 수료증 취득이 가능하다. 라이선스 취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연수수료 증명서가 필요하다.

16시간의 OJT 연수는 고용 후 90일 이내에 16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의 OJT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내용은 경비원의 임무와 경비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 고객요청에 관한 것들이다.

‘8시간의 연차연수’는 16시간의 OJT 연수수료 이후, 매년 8시간의 연차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특별무장경비원의 경우에는 이것 외에 ‘47시간의 총기훈련’, ‘8시간의 연차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1992년의 경비원법 제정 전에는 법률로 정해진 연수는 없었다.

3.4.2 교육훈련 내용 및 시간

경비원법(Security Guard Act)에서 정해진 연수중에 교육자가 선택한 토픽,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뉴욕 주 행정규제(Official Compilation of Codes, Rules and Regulations) 중에 있다.

교육연수중에 최소한 취해야할 내용과 그 시간 수가 9NYCRR Part6027 Security Training Courses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내용이며, 그것만으로는 경비원법에 정해진 시간수에 달하지 못한다. 경비원 연수학교에서는 규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각 항목의 시간수 연장 등을 하는 것으로 경비원법이 그 기준이 된다.

또한, 연수학교가 제공하는 연수내용에 대해서는 범죄사법국에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인가후에 연수내용을 크게 변경할 경우에는 재차 인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3.4.3 교육훈련 실시기관

법률에서 정해진 연수코스는 범죄사법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 연수학교가 제공하고 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연수학교가 법정 연수코스를 제공할 수 없다. 대규모 경비업자의 중에는 사내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연수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인의 학생당 16m²이상의 넓이를 확보하고 인가를 받은 인스트럭터를 최소 1인 이상 확보하고 냉온방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연수학교의 인가에 관한 규정은 9NYCRR Part 6027 Approved Security Guard Training Schools에서 행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수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인스트

력도 범죄사법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인스트럭터의 인가를 할 때에는 시큐리티에 관한 지식이 70%, 경찰이나 군 등에서의 실무경험을 30% 비중으로 평가한다. 시큐리티에 관한 지식 70%의 내역은 범죄학에 관한 지식 40%와 프레젠테이션기술이 30%이다. 경찰관이 인스트럭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스트럭터의 인가에 관한 규정은 9NYCRR Part60 27 Security Guard Instructor Standards and Qualifications에서 행해지고 있다.

아울러 연수기관에서 시행되는 교육 커리큘럼은 범죄사법국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연수매뉴얼이 작성되어지고 있다. 패널위원회에 소집하는 위원은 연수내용에 따라 다르다. 총에 관련된 연수의 경우에는 경비업의 전문가뿐 아니라 총기의 전문가도 추가되어 있다.

3.5 경비업자와 경찰의 협력

3.5.1 상호협력 현황

뉴욕시 경찰국에서는 1986년부터 경비업자와의 제휴프로그램 APPL(Area Police/Private Security Liaison)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맨하튼의 미드타운 지구에서 30의 멤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뉴욕시 전체로 확대되어 1,300개의 가맹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APPL 프로그램에서는 월1회, 각 지구마다 경찰과 경비업자의 임원(director)이 모여 정보교환과 의논을 하고 있다.

APPL프로그램에 의한 큰 효과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찰과 경비업자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범죄방지에 는 횡의 정보연락이 중요하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유효하다. 예를 들면 감시카메라로 촬영한 상습 소매치기의 사진을 미팅에서 배포하는 것이 범죄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APPL프로그램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뉴욕시만이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3.5.2 정보교환과 경비원 교육훈련 협력

APPL프로그램 중에서 경찰과 경비업자와의 정보교환이 행해지고 있다. 그 외 많은 경비업체에서는 전직 경찰관을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 전직 경찰관의 경찰 재직시 인맥을 정보교환 등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경비원의 연수 강습담당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연수의 장소로서 Police Academy의 일부를 빌려주는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3.5.3 경비업의 치안유지에 대한 사회공헌

(1) 경비업의 활동분야

9.11 이후 시큐리티 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비업자 중에는 경찰에 업무가 박탈될지도 모른다는 의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자와 경찰이 제휴하여 대처해 가는 것이 새로운 방향이다.

경비원은 경찰관의 바람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감시카메라나 방범센서 등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경찰로서는 경비업자가 가진 이러한 기술적 노하우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2) 경비업에 대한 경찰업무의 위탁, 공공기관의 업무대행 및 지원

경비원의 권한은 일반인과 같으며, 체포 등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경비업자에게 경찰업무의 위양이 진행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

뉴욕 주에서는 경찰관과 경비원 간에 뉴욕 형사소송법(the Criminal Procedure Law)에 정해진 Peace Officer가 있다. Peace Officer는 지방자치체나 관공서 등이 임명한다. 이 종류에 대해서는 뉴욕 형사소송법 §2.10에 규정되어 있으며, Park Ranger이나, 터널이나 다리의 수위 등이 있다. 직무에 관련한 범위에서의 체포권이 인정되고 있다.

학교나 백화점 등이 Peace Officer를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Peace Officer가 경비원이 되고 있다. 어떤 백화점에서는 절도범을

체포할 때에 증거를 조사하고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까지 경비원이 하고 있다.

(3) 공항, 원자력시설 등 중요시설에서의 경비업의 활동

공항에서 경비는 70년대까지는 하이잭킹 대책이 중심이었으며, 경비비용은 항공회사가 부담하였다. 항공회사에서 공항경비 비용은 본래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었으며, 경비회사가 채용된 경향이 강하고, 경비의 품질은 낮았다.

9.11 테러이후에는 공항경비를 재검토하여 연방직원이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큰 경비업자에 의하면 이미 훈련을 한 품질이 높은 경비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연방직원을 훈련하여 경비를 맡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3.6 경비업 단체의 활동

뉴욕주를 포함한 전 미국의 경비업단체는 ASIS-International(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International), NASCO(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y Companies)가 있다. ASIS가 가장 큰 경비업단체이며, 그 활동은 국제적이다.

1955년 설립된 단체로서 전 세계 보안전문가 약 38,000명을 정회원으로 보유한 산업경비협회이다. 협회의 주요 목적은 세계 산업보안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산업보안 영역에서 리더쉽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11].

ASIS-International은 경비산업분야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이 표준들을 기준으로 하여 업체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지금 12개의 산업보안표준이 완성되어 공표 되었고 6개 분야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ASIS-International은 크게 세 가지의 보안산업관련 전문 자격증인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민간조사원(Professional Certified Investigator, PCI), 물리보안전문가 (Physical Security Professional, PSP)를 발급한다 [2].

4. 뉴욕 주(州)의 민간경비활동과 시사점

4.1 전문 범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

뉴욕 주의 경비업 소관관청은 뉴욕 주 주무성과 범죄사법국이다. 주무성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자격제도를, 범죄사법국은 경비원에게 의무부여 되어 있는 교육·연수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주무관청이 경비업무와 관련되어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제는 Private Investigators, Bail Enforcement Agents and Watch, Guard or Patrol Agencies License Law(민간탐정 및 보석금 시행대리인, 감시, 경비 및 패트롤 사업면허법(이하 경비 및 패트롤사업면허법이라 함)과 Security Guard Act of 1992~(일반영업법의 제7장A~), Title 19 New York State's Code of Rules and Regulation(NYCRR)(뉴욕주법 규제칙9편: 경비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다.

경비업 자격으로는 무장현금수송업, 탐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즉, 무장현금수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성으로부터 무장현금수송업(Armored Car Carrier) 자격을 취득, 탐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성으로부터 탐정(Private Investigator)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는 경비업허가 외에 다른 해당 업무에 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으나 경비업무 외에 업무를 허가이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경비업무에 대한 한정적 허가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경비업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에 대하여 매우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비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주무성(州務省)으로부터 경비업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정부가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사업면허법, 형사소송법, 경비·감시테크닉, 관리에 관하여 출제되며, 70%이상의 득점이 요구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신청서,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지문2부를 제출해야 한다.

경비업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경험, 연령, 시민권, 범죄력, 신뢰할 수 있는 주민 5인 이상의 승인,

보증증권, 상해보험에 대해서 경비 및 패트롤사업면허법 제72조, 제74조와 경비원법 제89-g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경비업자에 대한 검증에 있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 모두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4.2 밀접한 민·관 협력 연계

뉴욕시경과 경비업자간의 협력관계는 1986년부터 APPL(Area Police/Private Security Liaison)이라는 프로그램 시행되고 있다. 당초 맨하튼의 미드타운 지구에서 30개의 멤버에서 현재 뉴욕시 전체로 확대되어 1,300개의 가맹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두 단체는 지역의 치안안정을 위한 협력으로써 단순히 물적 지원만이 아닌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어있는가를 보고하고 경찰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가를 정보제공하는 기본적인면서도 근본적인 사항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매일 행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APPL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청해야만 한다. 회합에서는 범죄경향 등 비밀로 해야 하는 정보가 교환되는 것부터 신청자의 백그라운드를 경찰이 심사과정까지 거쳐 철저한 검증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관과 경비원 간에 뉴욕 형사소송법(the Criminal Procedure Law)에 정해진 Peace Officer는 지방자치체나 관공서 등이 임명하여 뉴욕 형사소송법 §2.10에 규정에 따라 Park Ranger나, 터널, 다리의 경비원 등이 있다. 직무에 관련한 범위에서의 체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나 백화점 등이 Peace Officer를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Peace Officer가 경비원이 되어 어떤 백화점에서는 절도범을 체포할 때에 증거를 조사하고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까지 경비원이 업무로써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가 단순히 이윤을 업으로 하는 이익집단이 아닌 국가 및 국민의 치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치안기관과 더불어 안전한 국가와 도시를 가꾸어 감은 물론이고 사익단체인 민간경비의 이미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미지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협

회 및 관련 단체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4.3 전문적 경비업 관련 단체의 활동

미국의 경비업 관련 단체는 우리나라의 사)한국경비협회와 같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전문적 경비업 관련 단체가 활동 중이다. 뉴욕 주를 포함한 미국에 경비업 관련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 단체는 1995년에 설립된 ASIS로 세계 112개국 38,000명의 회원이 가맹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경비업 관련 단체이다.

또한 경비업의 효율화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경비에 관련한 전문교육프로그램, 교재의 제공, 인증프로그램(CPP: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의 운용, 업계 잡지 Security Management의 발행,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경비에 관련된 Investigations, Security Management, Physical Security, Emergency Management 등40가지 이상의 교육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보안이나 매니지먼트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에 관한 시험을 통하여 경비원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경비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업무와 관련된 업체들이 경비원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검증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5. 결론

미국 경비업에 관한 규제는 각 주(州)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규제내용이 유사하다. 뉴욕 주는 가장 오래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 주 중에 하나이다.

경비업의 소관 관청은 뉴욕 주 주무성(Department of State)과 범죄사법국이 있다. 주무성은 경비업자·경비원의 자격 제도를, 형사사법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은 경비원에게 의무 부여되어 있는 교육·연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첫째, 전문 범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뉴욕 주의 경비업 소관관청은 뉴욕주 주무성과 범죄사법국이며, 주무성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자격제도

를, 범죄사법국은 경비원에게 의무부여 되어 있는 교육·연수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비업 허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무장현금수송업, 탐정업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허가를 추가로 받으면 관련 업무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밀접한 민·관 협력 연계이다. 뉴욕시경과 경비업자간의 협력관계는 1986년부터 APPL(Area Police/Private Security Liaison)이라는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는데, 최초 맨하튼의 미드타운 지구에서 30개의 멤버에서 현재 뉴욕시 전체로 확대되어 1,300개의 가맹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치안안정을 위한 민·관의 협력으로써 단순히 물적 지원만이 아닌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어있는가를 보고하고 경찰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가를 정보제공하는 기본적인하면서도 근본적인 사항까지도 논의하여 지역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미국의 경비업 관련 단체는 우리나라의 사)한국경비협회와 같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전문적 경비업 관련 단체가 활동 중이다. 뉴욕 주를 포함한 미국의 대표적인 단체는 1995년에 설립된 ASIS로 세계 112개국 38,000명의 회원이 가맹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경비업 관련 단체이다.

또한 경비업의 효율화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경비에 관련한 전문교육프로그램, 교재의 제공, 자격증(CPP: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의 운용, 업계 잡지 Security Management의 발행,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경비에 관련된 Investigations, Security Management, Physical Security, Emergency Management 등40가지 이상의 교육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보안이나 매니지먼트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에 관한 시험을 통하여 경비원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경비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업무와 관련된 업체들이 경비원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검증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참고문헌

- [1] 이윤근.(2003). 민간경비원론. 서울: 엑스퍼트.
- [2] 장현석.(2015). “미국산업보안협회 (ASIS-International)에 대한 소개”, 한국민간보안 산업연구원 웹진 no.1.
- [3] 藤本哲也, “アメリカの警備業: 民間警備保障の概念化”, (社)全國警備業協會, Security Time, vol.362, 2009. 4, pp. 29-32.
- [4] Application for licenses.
- [5] Armored Car Carrier Act.
- [6] Business of Installing, Servicing or Maintaining Security or Fire Alarm Systems
- [7] Private Investigators, Bail Enforcement Agents and Watch, Guard or Patrol Agencies License Law.
- [8] Security Guard Act.
- [9] Title 19 New York State’s Code of Rules and Regulation(NYCRR)
- [10] Penal Law
- [11] www.asionline.org.

[저자소개]



안황권(Ahn, Hwang Kwon)

1981년 경기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사)
 198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현재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e-mail: ahk9027@hanmail.net